

장에게 취업·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12조(자문회의 운영) ①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자원봉사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는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상호 호선토록 한다.

③자문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권한위임)시장은 제6조제2항·제7조 및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처리된 각종 사무 처리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 등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569 |
|----------|-----|

2000년 5월 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2000년 4월 24일 상정 의결)

(다음 페이지에 계속)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

가. 제안이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1999. 10. 31)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에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공자와 발주자간의 분쟁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날로 증가하는 건설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3조)

○ 심의기능 추가 :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자문기능 추가 : 건설공사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시공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건설기술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를 정함.(안 제12조 및 별표)

| 구 분                         |                          | 수수료(1건당)          | 비 고           |                |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 심의사항 |                          | 800,000원          | 8인×2일×50,000원 |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제7호의 심의사항     | 입찰안내서 심의                 | 800,000원          | 8인×2일×50,000원 |                |
|                             | 일괄입찰<br>공사<br>기본설계<br>심의 | 2개 업체 응찰시         | 3,000,000원    | 30인×2일×50,000원 |
|                             |                          | 3개 업체부터 4개 업체 응찰시 | 4,500,000원    | 30인×3일×50,000원 |
|                             |                          | 5개 업체부터 6개 업체 응찰시 | 6,000,000원    | 30인×4일×50,000원 |
|                             |                          | 7개 이상 업체 응찰시      | 7,500,000원    | 30인×5일×50,000원 |
| 기타 심의사항                     | 800,000원                 | 8인×2일×50,000원     |               |                |
| 기타 심의사항                     |                          | 800,000원          | 8인×2일×50,000원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용훈)

가. 제안이유 검토

건설기술법시행령이 1999년 10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공자와 발주자간의 분쟁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날로 증가하는 건설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개정조례안 검토

- (1) 조례안 제3조(기능) 제1항제1호중 “영 제39조제2항 각호의 1”을 “영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조례안 제6조(심의요청 등)제1항제1호중 “영 제39조제2항제1호”를 “영 제19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항 제2호중 “영 제39조제2항제2호”를 “영 제19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개정하려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가 삭제됨에 따라 개정된 동법시행령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2) 조례안 제3조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영 제21조제5항제5호에 의한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려는 것은 시설물의안전관

리에관한특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1종 시설물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점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신설된 규정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3) 조례안 제3조제2항 위원회 자문규정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시공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함은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발생하는 클레임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와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하여 건설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문기능임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4) 조례안 제12조제1항 심의수수료 개정은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 등을 요청하는 자가 시장에 납부해야 할 심의수수료에 대해, 현행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의3(수수료) 별표 19에서 규정한 설계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납부토록 하였으나, 1999년 12월

6일자로 동법시행규칙 별표 19의 수수료 산출기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 공사설계 등 심의요청한 자에 대한 심의수수료를 현행과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 조례에 명시하려는 내용으로써,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0조의 2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종합의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규정 내용을 일치시키는 한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건설공사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간 발생하는 건설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계획공정내 공사가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571 |
|----------|-----|

2000년 5월 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200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장석효)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는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금 외에 유가족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자 제정(1994. 12. 24) 되었으나 특별위로금지급이 완료되어 동조례의 존치실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용훈)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는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금 외에 유가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시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4년 12월 24일 제정되었으나 유가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동조례를 존치해야 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영 제39조제2항 각호의1”을 “영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조같은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영 제2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시공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제1호중 “영 제39조제2항제1호”를 “영 제19조제2항제1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2호중 “영 제39조제2항제2호”를 “영 제19조제2항제1호 나목”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공사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